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	배포일시	2018. 3. 27.(화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규철, 사무관 최찬, 주무관 김봉길 • ☎ (044) 201-3646, 4733, 3623	
	환경부 국토환경 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조은희, 주무관 김충환 • ☎ (044) 201-7270, 7275	
보 도 일 시		2018년 3월 2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27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 · 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

- ◇ 국토교통부·환경부는 ‘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 관리에 관한 공동훈령’ 3월 28일부터 시행
- ◇ 국토개발과 환경보전간 균형 및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·관리를 기대

-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,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 계획 수립시 자연·생태, 대기,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환경부(장관 김은경)는 국토의 개발·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하여 ‘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’을 제정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,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「국토기본법」 제5조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,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다.

- 공동훈령은 국토-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,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【 공동훈령 주요내용 】



- ▶ (적용범위)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**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**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**도종합계획, 도시·군기본(관리)계획** 및 시·도, 시·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(제4조)
- ▶ (추진체계) 상호 계획수립시 **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(차관급) 및 지자체(부시장, 부지사급)의 계획수립협의회**를 구성·운영하여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(제7조 제10조)
 - ※ (국가계획수립협의회) 양부처 차관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(시민단체, 학계, 관계 전문가 등), (실무협의체) 실무 협의를 위한 양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 구성
- ▶ (조정체계)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, **국토정책위원회** (위원장 국무총리) 및 **도시계획위원회**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하여 **통합관리 이행력 담보**(제7조 제10조)
- ▶ (통합관리 사항) 통합관리를 위해 **양 계획에 연계·반영**해야 할 사항을 규정(제8조)

분 야	주요 내용
자연·국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자연생태계의 관리·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◦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
기후변화·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◦ 기후변화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
수질/수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깨끗한 물 확보, 물부족 대비·대응
대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기질 개선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
폐기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을 제고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그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사항

- ▶ (정보공유) 양부처간 **환경-국토 정보시스템 공유 체계 구축**(제12조)

-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 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.
- 이에,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, 제5차 국토종합계획('20~'40)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('20~'40)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"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 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,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" 이라고 말했다.

붙임 훈령전문. 끝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찬 사무관(☎ 044-201-473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